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6 선고 2022가단5336196 판결 [보증채무금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3. 16.

판 결 선 고 2023. 4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 및 결론

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.

판사 이회기

별지